

## □ 기술애설 □

# 전자도서관과 저작권

서울지방법원 황찬현

## 1. 서론

인류의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종이의 발명과 인쇄술의 개발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들 말한다. 즉, 종이는 인류가 쌓아놓는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매체로서 인쇄술은 이를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도서관은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중 특히 문헌에 실려 있는 것을 수집, 정리, 보관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여 왔다.

오늘날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종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각종의 전산매체의 개발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일시에 저장하고 쉽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 한편,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대중적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를 신속, 저렴하게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종이와 인쇄기술로 대표되는 종이문화에서 자기(Digital)문화로 대체되어 문화적인 변화를 알리는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헌등에 기록된 정보의 중요성도 점차 단행본이나 논문문등과 같이 그 내용을 차분하게 음미함으로써 저자의 사상과 연구업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일회적이지만 긴급성을 요구하는 정보의 중요성도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형태의 변화와 기록매체의 개발 및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도 변화되어야 하고 그 수단으로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전자도서관이라고 할 것이다.

전자도서관<sup>1)</sup>의 개념은 Kenneth E. Dowlin<sup>2)</sup>

가 1989년경 제창한 이후 여러 가지로 논의되어 왔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도서관이라 함은 첫째로, 종래의 도서관 기능 즉 목록작업, 대출작업 및 도서목록 검색작업 등을 모두 전자화한 것 즉 전자화된 도서관을 말하며, 둘째로, 자기디스크나 광디스크 등의 전산기록매체에 정보를 축적한 것 즉 전자화된 정보의 저장고를 말한다.

아래에서는 전자도서관에 관한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 중에서 특히 전자도서관 구축시와 구축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할 단계에서의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한다.

## 2. 문제의 소재

전자도서관을 구축함에 있어 이미 디지털화된 자료인 전자출판물에 대하여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그 상태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전자도서관의 구축에 있어서는 특별한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에 대하여 기존의 방식인 서지정보인 문헌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뛰어넘어 이용자에게 그 내용까지 제공하기 위하여는 문헌의 전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그 내용을 Text 또는 Image 방식으로 수록하여야

2) Kenneth E. Dowlin은 전자도서관을 Electronic Library로 생각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Digital Library와는 그 출발점에서 상이한 점이 많으나 Digital Library의 본적 개념은 그로부터 연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전자도서관은 digital library의 번역문이다.

한다.

Text 방식으로 입력할 경우는 수작업으로 일일이 그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서<sup>3)</sup> 입력한 내용을 즉시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검색을 함에 있어서도 현재의 문헌 정보검색의 기술만으로 훌륭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반하여, Image방식으로 입력할 경우에는 Scanner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서 입력함에 있어 입력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입력된 내용이 점과 공백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출력하여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식별가능한 정보가 되나 컴퓨터로는 식별가능한 정보로 사용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Image로 입력할 경우 검색을 위하여 별도의 텍스트로 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게 되고,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초록을 추출하여 별도의 정보 검색 단위로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초록을 구축하는 방법으로는 저자가 직접 작성한 초록을 사용하는 방법, 도서관에서 문헌의 내용을 검토하여 초록을 작성하는 방법을 예상할 수 있고, 그 중간적인 형태로 문헌의 목차로 초록을 대신하는 방법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이용가능한 방법은 입력의 비용 및 시간의 문제등으로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문헌의 내용을 Image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야기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것인가가 본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다.

### 3. 현행법의 규정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도서관등에서는 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저작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등이

3) OC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Image로 된 내용을 Text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OCR의 인식률이 실용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한편, 미국법의 해석에서는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면책이 주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digital의 형태로는 복제를 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진복제방식과 달리 digital방식에 의한 복제는 1개의 복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빠른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다량의 복제가 가능할뿐더러 품질은 원저작물과 전적으로 동일하므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심대하다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복제의 방법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아니하고 복제의 목적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가 가능한 것은 보존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존의 목적을 위하여 digital방식으로 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도서관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복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도서관이 보존등의 자신의 직접적인 목적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에 면책이 주어지는 범위가 달라진다. 아래에서는 전자도서관 구축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즉, 자신이 소장하는 도서를 digital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현행의 법률에 의하여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4. 전자도서관구축과 저작권

### 4.1 내용입력과 저작권

도서관이 소장한 저작물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은 텍스트 방식과 이미지 방식이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입력하더라도 그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저작물의 디지털화<sup>4)</sup>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동일한 문제를 발생한다.

다.

즉 저작물의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태양으로 볼 때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 복제행위가 저작권의 침해가 되느냐하는 문제는 행위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공정사용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 보존등의 목적을 위하여 컴퓨터에 디지털 형식으로 보존의 목적 등으로 입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가 가능하고 그밖의 목적 예컨대 전자도서관의 구축을 위한 입력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게 된다.

## 4.2 초록과 저작권

초록 입력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본문입력의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나 전자도서관을 구축함에 있어 본문 입력에 앞서 초록만으로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나 본문의 입력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으나 초록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가 없었던 경우에 대하여는 초록의 입력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된다.

첫째, 저작권자가 이미 초록을 작성한 것을 이용하는 것은 이는 이른바 저작자 스스로 작성한 제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특별히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한 저작권자가 초록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산업의 발전이라는 2가지의 이상을 조화있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영국 저작권법 제60조 제1항은 “학술 또는 기술상의 주제에 관한 논문이 그 논문의 내용을 기술하는 요약물 수반하여 정기간행물에서 발행된 경

우에는 그 용약을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은 그 요약 또는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시사가 될 것이다.<sup>5) 6)</sup>

둘째, 저작권자들이 초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저작권자가 작성한 초록만으로는 자료검색을 위하여는 부족한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초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도서관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제2차저작물을 새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초록 자체는 별도의 도서관의 저작물로서 보호되었지만 저작자와 사이에서는 그의 승낙이 없는 한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다만 초록이 원저작물의 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복제 또는 개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저작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도서관의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입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미지로 문헌 내용 전부를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수록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초록을 만들 필요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원저작물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목차를 그대로 초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목차에 대하여도 저작권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것이나 목차에 나오는 단어를 키워드로만 사용하고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목차를 기초로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경우에는

5) 한국지적소유권학회, 전자출판물의 배제방안에 관한 연구. 1998. 12. 123면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어느 신문사가 동 신문에 실린 글들에 관한 초록과 함께 목록을 제공하는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였으나 프랑스 법원에서는 기각되었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어느 판례판환 회사의 법령집을 기초로 하여 법률정보전산망회사가 판례의 초록과 인용페이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미국연방항소법원은 판례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6) 학문적 저작물의 보호가능성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개성적 특성과 학문적·기술적 공동재산을 구분하여야 하며 이때 후자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자유사용이 허용된다. 이기수, 학문적 간행물의 저작권 보호, 한국저작권논문집(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p. 313 참조.

4) 저작권의 권리의 한 태양으로 디지털화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이를 별도의 권리로 인식할 사회적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기존의 저작권의 한 내용인 복제권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세한 것은 박성호, 정보의 디지털화권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대응방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대책, p. 45 참조.

위 초록의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없을 것이다.<sup>7)</sup>

### 4.3 도서관의 대책

현행법의 해석상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물의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보존의 목적등의 저작권법상의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들로부터 기존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데 대하여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도서관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에 대가를 지불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 4.4 해결방안

기존의 도서관을 전자도서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많은 기술적, 재정적인 문제점이 있으나 실제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자의 권리보호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공정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서관이 기존의 저작물을 전자도서관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없다는 내용의 제도가 될 것이나 저작물이 디지털된 경우에도 현재의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유사한 정도로 보호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로서는 위 제도의 도입은 어렵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저작권자 권리의 보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저작물의 집중관리제도와 관련하여 ① 시장원리에 따르는 방안, ② 저작권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③ 저작자실명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준거래규칙제정, ④ 저작권의 집중관리 및 강제이용허락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그로 하여금 저작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물이 산업발

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③번의 저작자 실명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일단제로서는 무난한 방안이라고들 한다.<sup>8)</sup>

이 방식은 위 ①, ②의 방식에 참가하여 저작권의 이용과 양도에 관한 표준거래규칙을 제안하는 것이다. 저작권이 개인의 권리에 속하고 저작물의 가치가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저작권제도의 활성화와 저작물의 대량이용의 촉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이용과 양도에 관한 거래의 표준을 제정하고 그러한 표준을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다만 실명등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저작물의 위탁관리는 저작자의 자발적인 위임에 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4.5 전자도서관이용과 저작권

기존의 도서관이용에서 적용되는 ①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저작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규정은 전자도서관에서도 여전히 적용되며, 전자도서관이라고 하여 특별히 법률상의 취급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이미 디지털화된 전자출판물을 수집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전자출판물 자체를 직접 대여하거나 전자도서관의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파일 형태의 저작물 자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 속성상 위 복제물이나 파일을 이용하여 적은 노력으로 무한 복제가 가능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전자출판물이나 파일을 이용하여 종이로 그 내용의 일부를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전자도서관의 컴퓨터에 직접 접근하여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내용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위 법규정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작물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출력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8) 나천열, 이진우, 멀티미디어 시대의 집중관리제도의 가능성,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p. 89~91 참조.

7) 대법원 1993. 1. 21.자 92마1081 결정 참조.

## 5. 결 론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한다면,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저작물을 digital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인데도, 저작물의 Image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현재의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법제 하에서는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는 보존등의 목적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면책이 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법에서 발달한 공정사용의 기준<sup>9)</sup>으로 보나,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저작권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더라도 특히 비영리 공공도서관에게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digital방식의 복제를 허용하여야 할 사회적, 공익적 필요가 있고, 해석상으로도 reverse engineering<sup>10)</sup>에 있어서와 같이 복제의 목적이 결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정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복제의 방법에 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목적이 순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한정될 경우 면책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다만 해석론상으로는 다소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집중관리제도를 도입 등 허용될 수 있는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 황 찬 현

197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1982 판사 임관  
 1993~1996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  
 1996~현재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1997~현재 서울지방법원 판사

9) 미국에서의 공정사용의 기준은 ①당해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이용인가 아니면 비영리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인가와 같은 당해 이용의 성질과 목적 ②당해저작물의 성질 ③당해 저작물 전체 중에서 이용된 부분의 양과 정도 ④저작물의 가치와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상세한 것은 전석진, 정상조, 1995, "컴퓨터와 법률", 정보시대, p. 82 참조.

10) 상세한 것은 전석진, 정상조, 전계서, p. 84~91, 宋田政行, 1994, "컴퓨터 프로그램의 역편과일러에 관한 저작권문제", NBL 547호 p. 14~21, 阿川尙之 등, 1993,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게임소프트웨어를 만들 권리", 國際商事務務, 21권 9호 p. 1047~1055 참조.